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22 선고 2024나2056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22 선고 2024나2056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8 선고 2023가소109796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7. 25.

판결선고 2024. 8. 22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가소109796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9,532,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4. 8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4,532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4. 8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가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임야 626㎡(이하,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 허위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는데, 위 임야가 그 후 공매되면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수령한 배당금 29,532,200원 중 24,532,00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바, 그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.

2. 판단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2007. 2. 7.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60,000,000원)을 설정한 사실, 2011. 2. 1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 29,532,2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피고는 원고의 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바,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2011. 2. 1. 성립되었고, 그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,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23. 4. 25.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

사정이 없는 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.

원고는 이에 대해, 피고가 2013. 7. 27. 위 부당이득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, 시효가 중단되어 그 무렵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,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날 500만 원을 영수한 것으로 보이나,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일부로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연화, 판사 해덕진, 판사 김형작